



12-나. 교원 강의 담당 현황

12-나-2. 교원 강의 담당 비율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대학원

【공시시기】 : 2023년 4월, 10월

【공시내용】 : 2023년 교원 강의담당 비율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2023학년도 1학기(4. 1.), 2학기(10. 1.))

기준연도	단과대학	학과(전공)	구분	학과특성	학기	전임교원		비전임교원										강의담당 학점 총계		
						겸임교원		초빙교원		강사		시간강사		기타		계				
						강의담당 학점	비율	강의담당 학점	비율	강의담당 학점	비율	강의담당 학점	비율	강의담당 학점	비율	강의담당 학점	비율		강의담당 학점	비율
					1															
					2															
					3															
					4															

■ 검증사항

- 교원 강의담당학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하되, 학과별 학기별 교원 강의담당학점을 구한 값을 반올림함

■ 작성지침

【학기】 :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, 계절학기는 입력에서 제외

【교원 강의 담당학점】 : 학기별로 대학에 개설된 정규학위강좌 일체에 대해 교원이 실제로 강의한 학점(원격강좌, 집중강좌, 현장실습, 논문지도, 사회봉사, 체플 등도 담당교원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하여 입력)

※ 입력 제외 대상(아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입력에서 제외)

- 조사기준일 시점 폐강되어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강좌의 강의 내역

- OCU, KCU, 각종 공유대학 등 우리 대학이 아닌 타대학에서 진행된 강좌의 강의 내역
- 담당교수가 미지정된 현장 실습 또는 논문지도 등의 강좌의 강의 내역
- ※ 자대학에서 개설되어 당해연도 4.1. 기준 폐강되지 않고 진행되는 강의는 모두 입력 대상에 해당
- ※ 강의 개설 학과 기준으로 입력하며, 개설 학과가 없는 강좌의 경우 기타(소속학과없음)에 입력
- ※ 분반은 각각의 강좌로 보고 각 분반에 따른 학과에 교원 강의담당학점을 각각 입력,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에 해당하는 학점을 강의시간 비율로 나누어 계산, 합반은 합반 후 해당 강좌를 운영/관리하는 학과에만 하나로 입력

예시

1. 분반의 경우

경영학원론(3학점)을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A반, B반, 비전임교원이 강의하는 C반(총 3개 분반)이 있을 경우,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3(학점)×2(전임교원 수)이며,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3(학점)×1(비전임교원 수) 로 하여 실제 운영과 같이 교원강의담당학점 합계는 9학점이 됨

2. 팀티칭의 경우

경영학원론(3학점)을 전임교원 1명이 2시간, 비전임교원 1명이 1시간으로 하여 팀티칭을 하는 경우,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2(전임교원강의시간수)÷3(총강의시간수)×3(학점)이며,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1(비전임교원 강의시간)÷3(총강의시간수)×3(학점)으로 교원강의담당학점 합계는 3학점이 됨

3. 합반의 경우

- ① 음악학과에서 합창 1(3학점), 합창 2(3학점)를 합반하여 수업하고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경우, 한 강좌로 보아 전임교원 담당학점에 3학점만 입력
- ②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경제학원론(3학점)을 경제학과, 농업경제학과에서 강좌를 각각 개설하였지만 합반하여 수업하고 경제학과에서 운영/관리하는 경우, 교원강의담당학점은 경제학과 전임교원 담당학점에 3학점만 입력

【전임교원】 :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「교육공무원법」 또는 「사립학교법」에 의하여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

- ①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
- ② 해당학기 현재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,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
- ③ 국·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,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·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
- ④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,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교양교육 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/강의전담교수, 연구전담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, 연구소 소속 교원(인문한국사업: HK, 중점연구소사업 등)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
- 국·공립대 기금교수는 대학의 「기금교수운영규정」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
 - 「교육공무원법」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또는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에 따른 사학연금에 가입된 교원
 -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(최소 조교수 수준) 전일제(full-time) 근무 계약교원

○ HK교수

- 국·공립대는 「HK교수 운영규정」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
- 사립대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

○ 산학협력중점교수: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(「고등교육법」 제15조제2항)

- 국·공립대는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
-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

※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 불가

전임교원 인정 제외대상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또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③ 학교교육·지도, 학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 ④ 학과(부) 학생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,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|
|---|

※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

【겸임교원】: 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2호와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6조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

- ① 해당학기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
 - ②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
 -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(단,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제1항각호, 제17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)
 - ④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(본직)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교원
 - ⑤ 원소속(본직)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(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)으로서 근무경력(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포함)이 3년 이상인 사람(다만, 전일(全日)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 포함)
 - ⑥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·실험·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교원
- 산학협력중점교수: 산업체 경력자이면서 산업체의 전일제(full-time)근무 계약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(「고등교육법」 제15조제2항)

※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

겸임교원 인정 제외대상

- ① 겸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
- ②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
- ③ 강의 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와 유사하지 않거나 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교원
- ④ 본직기관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교원
- ⑤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

【초빙교원】 : 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3호와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6조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

- ① 해당학기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
 - ②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
 -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(단,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제1항각호, 제17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)
 - ④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교원
 - ⑤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인 교원
 -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,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임용 위임을 받은 산학협력단, 사립대학 병원 직장가입자 연구교수 등은 학교 직장가입자로 인정
 - 단, 국립대학 병원은 국립대학과 분리된 독립법인으로 학교 직장가입자로 인정 불가
 - ⑥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
- 산학협력중점교수: 산업체 경력자이면서 산업체의 전일제(full-time)근무 계약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(「고등교육법」 제15조제2항)
- ※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

초빙교원 인정 제외대상

- ① 초빙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
- ②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

【강사】 :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2, 제16조 및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4조의8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

- ① 개정 「고등교육법」 시행(2019.8.1.)에 따라 임용되어 해당학기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강사
 - ②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
 -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(단,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)
 - ④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, 임금(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), 복무 등 근무조건, 면직사유, 재임용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
- ※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강사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

【시간강사】 : 해당학기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시간강사

【기타교원】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3호에 따라 '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'으로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교원

- ① 해당학기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, 강사, 겸임교원, 초빙교원, 시간강사를 제외한 교원
 - ② 해당학기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이며, 본교에서 전임교원, 강사, 겸임교원,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지만 각 교원별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거나 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교원
- ※ 총장 혹은 본교 연구원 등이 강의하는 경우, 기타교원에 입력

【(강의 담당) 비율(%)】 : (강의 담당 학점/강의 담당 학점 총계) × 100

■ 참고사항

-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
- 연간 2학기 운영 대학은 1학기 현황은 4월, 2학기 현황은 10월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4월 및 10월공시 입력 시기에 학기가 확정된 다학기제 또는 계절제 등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각각 4월 및 10월공시에 입력(4학기 이상은 10월공시 이후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별도 안내 예정)
- 4월 및 10월공시 입력 시기에 학기가 확정되지 않은 다학기제 또는 계절제 등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학기별로 확정 시 입력(1학기는 4월공시 이후, 2학기 이상은 10월공시 이후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별도 안내 예정)

구분		입력 시기			
		1학기	2학기	3학기	4학기 이상
4월 및 10월공시에 학기가 확정된 대학	연간 2학기 운영 대학	4월공시	10월공시	-	-
	연간 3학기 이상 운영 대학	4월공시	10월공시	10월공시	10월공시 이후
4월 및 10월공시에 학기가 확정되지 않은 대학		4월공시 이후	10월공시 이후	10월공시 이후	10월공시 이후